

·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 출 인	상호(대표자) (유)진산업개발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로 118	
건 축 물	건물명(현장명)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5길 83
	연면적(m ²) : -	작업기간 : 2017. 11. 20. ~ 2017. 11. 25.
	석면건축자재 면적(m ²) : 506.25m ²	
측정기관	상호(대표자) :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 617-86-10498
	주 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215 2층(남중동)	(전화번호: 063-851-7787)
측정일시	2017년 11월 19일~20일	
측정결과	불임 참조	
측정지점 위치 (도식도)	불임 참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일

제출인 (유)진산업개발 (서명 또는 인)



군산시청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없음
------	--	-----------

2017-11-0024-1호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현장명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유)진산업개발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
전북 익산시 인북로 215 (남중동)
TEL : (063) 851-7787, 851-1502
FAX : (063) 842-3573
E-mail : skyent1003@hanmail.net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측정의뢰자 (석면해체·제거업자)	현장명(공사명·작업명)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현장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설림5길 83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번호 : 군산-20170163	의뢰자 : (유)진산업개발
	전화번호 : 010-4168-7904	대표자 : 홍 유 진

2. 측정기간 - 2017년 11월 19일~20일

3. 측정결과 : 불임 참조

4.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 불임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2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일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



■ 석면비산 측정방법

- 시료채취지점 선정 기준[개별사업장-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장]

연번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지경계선 지점"은 사업부지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 2. "위생설비 입구 지점"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지점을 말한다. 4. "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음압기 지점"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3m~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반출구 지점"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2	<p style="text-align: center;">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지경계선 지점"은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부지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 2. "위생설비 입구 지점"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고려한 시료채취 지점을 말한다. 4. "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음압기 지점"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3m~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보관지점"은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부지 내에 석면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경우에 임시 보관하는 곳의 주변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7. "폐기물 반출구 지점"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8. "거주자 주거지역"은 사업부지내 거주자가 석면 해체·제거 기간에 거주하는 경우 당일 풍향을 고려하여 가장 인접한 거주지에서 주변 2m~3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 석면비산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연번	주 해
1	<p>■ 시료채취 유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경계선은 2,400L, 작업장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은 1,200L를 기준으로 하되, 먼지의 영향 및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하여 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위생설비, 음압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료를 채취할 있다.
2	<p>■ 분석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방법은 위상차현미경(PCM)법, 주사전자현미경(SEM)법, 투과전자현미경(TEM)법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TEM)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위상차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의 전처리 및 분석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을 따르고 주사전자현미경법은 ISO 14966을 따르며 해당 분석장비는 각 시험기준의 장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위상차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분석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시료 채취 없이 분석된 필터에 남아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의해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정성·정량 방법은 제8조에 따른다.
3	<p>■ 분석결과 평가 및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상차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에서 기준인 0.01개/cc를 초과한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석면'을 정성·정량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 위상차현미경법과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분석 결과를 공기 중 '석면' 농도로 간주 한다.

■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측정여부	
작 업 장 주 변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X	
	작업장 주변	실내	1개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 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X
		실외	1개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 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X
	음압기	전수(1개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 합하게 설치해야 함	X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X	
	폐기물보관지점	전수(2개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X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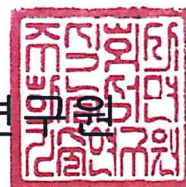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분석번호	AR.NO.20170754					분석 일시	2017. 11. 19
측정 결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시간			측정 결과 (f/cc)	검출석면
			START	END	측정(분)		
	A - 1	부지경계선1	11:20	15:20	240분	0.0032	기준치 이하
	A - 2	부지경계선2	11:20	15:20	240분	0.0020	기준치 이하
	A - 3	부지경계선3	11:20	15:20	240분	0.0029	기준치 이하
	A - 4	부지경계선4	11:20	15:20	240분	0.0020	기준치 이하
	-	-	-	-	-	-	-
	-	-	-	-	-	-	-
	분석 연구 팀장		구 지 연		분석 연구원		심 동 섭

※ 참 고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따라 1㎡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공기 중 농도 기준 : 0.01개/㎤ 이하)
-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
-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
- 검출한계<0.002/㎤ “<”는 검출한계를 뜻함.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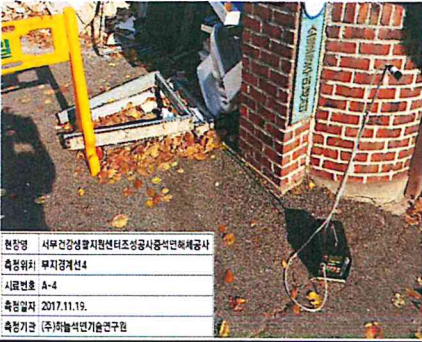


■ 석면비산 측정지점 위치도

측정지점 위치도 (2017. 11. 19)



■ 시료 채취사진 대장

시 료 채 취 사 진					
시 료 번 호	A-1	시 료 번 호	A-2	시 료 번 호	A-3
시료채취부위	부지경계선1	시료채취부위	부지경계선2	시료채취부위	부지경계선3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p>현장명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부지경계선1 시료번호 A-1 측정일자 2017.11.19.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p>현장명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부지경계선2 시료번호 A-2 측정일자 2017.11.19.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p>현장명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부지경계선3 시료번호 A-3 측정일자 2017.11.19.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시 료 번 호	A-4	-이하여백-			
시료채취부위	부지경계선4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p>현장명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부지경계선4 시료번호 A-4 측정일자 2017.11.19.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측정여부	
자 면 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 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실외	1개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 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X
	음압기	전수(1개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 합하게 설치해야 함	○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폐기물보관지점	전수(2개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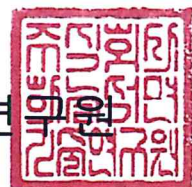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분석번호	AR.NO.20170755				분석 일시	2017. 11. 20	
측정 결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시간			측정 결과 (f/cc)	검출석면
			START	END	측정(분)		
	B - 1	부지경계선1	08:50	12:50	240분	0.0034	기준치 이하
	B - 2	부지경계선2	08:50	12:50	240분	0.0041	기준치 이하
	B - 3	부지경계선3	08:50	12:50	240분	0.0035	기준치 이하
	B - 4	부지경계선4	08:50	12:50	240분	0.0035	기준치 이하
	B - 5	위생설비입구	09:00	09:40	40분	-	검출한계미만
	B - 6	작업장주변(실내)	09:20	11:20	120분	0.0033	기준치 이하
	B - 7	음압기배출구	10:00	10:40	40분	0.0025	기준치 이하
	B - 8	폐기물반출구	14:00	14:40	40분	-	검출한계미만
	B - 9	폐기물보관지점	16:00	16:40	40분	-	검출한계미만
B - 10	폐기물보관지점	16:00	16:40	40분	-	검출한계미만	
분석 연구 팀장		구 지 연		분석 연구원		심 동 섭	

※ 참 고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따라 1㎡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공기 중 농도 기준 : 0.01개/cm³ 이하)
-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
-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
- 검출한계<0.002/cm³ “<”는 검출한계를 뜻함.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



■ 석면비산 측정지점 위치도

측정지점 위치도 (2017. 11. 20)



■ 시료 채취사진 대장

시 료 채 취 사 진					
시 료 번 호	B-1	시 료 번 호	B-2	시 료 번 호	B-3
시료채취부위	부지경계선1	시료채취부위	부지경계선2	시료채취부위	부지경계선3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p>현장명 서무건강영양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부지경계선1 시료번호 B-1 측정일자 2017.11.20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p>현장명 서무건강영양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부지경계선2 시료번호 B-2 측정일자 2017.11.20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p>현장명 서무건강영양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부지경계선3 시료번호 B-3 측정일자 2017.11.20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시 료 번 호	B-4	시 료 번 호	B-5	시 료 번 호	B-6
시료채취부위	부지경계선4	시료채취부위	위생설비입구	시료채취부위	작업장주변(실내)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p>현장명 서무건강영양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부지경계선4 시료번호 B-4 측정일자 2017.11.20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p>현장명 서무건강영양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위생설비입구 시료번호 B-5 측정일자 2017.11.20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p>현장명 서무건강영양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작업장주변 시료번호 B-6 측정일자 2017.11.20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시 료 번 호	B-7	시 료 번 호	B-8	시 료 번 호	B-9
시료채취부위	음압기배출구	시료채취부위	폐기물반출구	시료채취부위	폐기물보관지점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분 석 결 과	석면 0.01개/cm ² 미만
 <p>현장명 서무건강영양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음압기배출구 시료번호 B-7 측정일자 2017.11.20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p>현장명 서무건강영양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폐기물반출구 시료번호 B-8 측정일자 2017.11.20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p>현장명 서무건강영양지원센터조성공사용석면해체공사 측정위치 폐기물보관 시료번호 B-9 측정일자 2017.11.20 측정기관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p>	

제2017-120004호

석면조사기관 지정서(변경)

기관명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	
소재지	(54620)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215 2층()	
대표자성명	구지연	
지정사항	총 대행(지정) 한 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관 할 지 역 대행(지정) 한 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대행(지정) 지역	광주청

※ 준수사항

1.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17. 3. 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